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(김달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161

발의연월일: 2017. 9. .

발 의 자: 김달호 의원

찬 성 자: 문복란의원, 김종곤의원

은복실의원, 윤종욱의원

(4명)

1. 제안이유

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 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(안 제5조 ~ 제6조)

다.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·시행(안 제7조)

라.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기능(안 제9조 ~ 제10조)

마.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(안 제11조)

바.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(안 제12조 ~ 안 제13조)

사.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(안 제14조)

아.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아동복지법」,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나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편성

다. 입법예고: 2017. 10. 10. ~ 10. 15. (6일간)

라. 기 타: 특이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아동복지법」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동"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보호자"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아동학대"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 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 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아동보호전문기관"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
- 제3조(적용범위)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- 제4조(금지행위)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5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, 보호, 치료의뢰 및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·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·감독 및 교육,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- ②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(이하 "예방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
- 2.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3.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 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8조(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, 교육기관, 사법경찰, 의료기관,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- 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한다.
- 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
- 2.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3.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1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교육) 구청장은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3조(홍보 등) 구청장은「아동복지법」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4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 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실시할 수

있다.

- 제15조(관련정보의 제공)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6조(비밀준수의 의무)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 사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.
- 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관계 법 규 >

□ 아동복지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아동복지"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·사회적·정서적 지원을 말한다.
- 3. "보호자"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- 4. "보호대상아동"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 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.
- 5. "지원대상아동"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·경제적·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.
- 6. "가정위탁"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아동학대"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

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- 제17조(금지행위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
- 2.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
- 3.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학대행위
- 4. 삭제 <2014.1.28.>
- 5.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
- 6. 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·양육·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
- 7.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
- 8.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
- 9.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 위
- 10.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 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

- 11.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- 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1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- 2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·교육·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
- 3.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·운영
- 4.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
- 제23조(아동학대예방의 날)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,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,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
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- 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5.29.>
 - 1.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- 2.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)
 - 3. 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
 - 4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- 5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- 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- 7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- 8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지원

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
- 10. 「소방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
- 1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
- 1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- 13.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
- 14. 삭제 <2016.5.29.>
- 15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
- 16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 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 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
- 17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 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

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- 18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 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- 19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- 20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교직원,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
- 2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- 22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
- 23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
- 24.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
- 25. 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-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1. 1. 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9. 29. / 김달호 의원

나. 회부일자: 2017. 10. 20.

다. 상정일자: 2017. 10. 30.

(제23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김달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(안 제5조 ~ 제6조)

다.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·시행(안 제7조)

라.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. 기능(안 제9조 ~ 제10조)

- 마.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(안 제11조)
- 바.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(안 제12조 ~ 안 제13조)
- 사.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(안 제14조)
- 아.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「아동복지법」,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- 나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- 다. 입법예고: 2017. 10. 10. ~ 10. 15.(6일간)
- 다. 기 타: 특이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1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
- 안 제1조 ~ 제2조에서는
-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,
- 안 제3조 ~ 제4조에서는
 - 조례의 적용범위와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- 안 제5조 ~ 제6조에서는
 -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는
-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9조 ~ 제10조에서는
-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였고,
- 안 제11조에서는
 - 관련기관 및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2조 ~ 14조에서는
 - 구청장의 아동학대 예방교육, 홍보, 지도·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 - 한부모 가정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,
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,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언론의 아동학대 범죄 보도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.
 - 실제로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연 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현황을 보면, 2014년 1만 7782건에 서 2015년 1만 9203건, 2016년 2만 966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 년 1월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, 서울시를 비롯하여 9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 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,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.
- 다만, 본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,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.
- 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.
- 7. 토론요지: 없음.
- 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